##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14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고민정・박정현・강경숙

박성준 • 이병진 • 서미화

김준혁 • 문정복 • 김동아

이정문 · 오세희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문상담교 사의 배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며 유아의 문제행동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데, 유아기의 행동 문제나 정서적 어려움은 성장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현행법에도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아의 심리적·정서적 발달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유치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정교사(1급·2급)·준교사"를 "정교사(1급·2급), 준 교사 및 전문상담교사(1급·2급)"로 한다.

별표 2의 준교사란 다음에 전문상담교사(1급·2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문상담교사

(1급 • 2급)

- 1. 전문상담교사(1급):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전문상 담교사(1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2. 전문상담교사(2급):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전문상 담교사(2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20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유치원에 전문상담교사
	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
	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
	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
	<u>를 둔다.</u>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
	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생 략)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사는 <u>정교사(1급·2급)·</u>	② <u>정교사(1급·2급),</u>
<u>준교사</u> 로 나누되, 별표 2의 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1급·
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u>2급)</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	
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b></b>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